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며,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 주차장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별표1을 적용 (이 경우 “시장은 구청장”으로 본다)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”를 제3조제3항을 적용(이 경우 “시장은 구청장”으로 본다)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노외주차장의 표지는”을 “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는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”을 “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”으로 하며, 동조 제3항 중 “노외주차장 설치자는”을 “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중제1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한다

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, 노외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

③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율, 대지면적의 최소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시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폐차 또는 이용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“노상 및 노외주차장의”를 “노상주차장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별지 4”를 “별지 제4호 서식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장애인전용주차장의설치기준)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의 2 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설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(신설)</p> <p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.)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(이하 "시조례"라 한다) 별표 1을 적용(이 경우 "시장은 구청장"으로 본다)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주차장의 표지)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<p>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주차장의 설치)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,</p>	<p>제1조의2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며,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주차장조례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..... 제3조제3항을 적용 (이 경우 "시장은 구청장"으로 본다)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주차장의 표지) ①.....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②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주차장의 설치)① (삭제)</p> <p>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, 노외주차장</p>

현행	개정안
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규정을 신고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5조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)</p> <p>①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주차시설 배치도</p> <p>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교통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(축척 1200분의 1이상일 것)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 (삭제)</p>
<p>제16조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)</p> <p>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 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·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 (삭제)</p>